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성주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3. 6.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5	9	1	1,457	2	180,707	1	190,629
1	□ □ □ □ 과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1						
2	□ □ □ □ 과	근속승진자 교육파견에 따른 후속 승진 부적정 등		1						
3	● ● 소	식품위생법 등 위반 관련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4	◆ ◆ 과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적정		1						
5	♣ ♣ ♣ ♣ 실	특산품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1						
6	◆ ◆ 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1						
7	◆ ◆ 과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1						1	190,629
8	□ □ □ □ 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부적정	1		1	1,457				
9	目目目目目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미이행	1							
10	▤ ▤ ▤ ▤ 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				1	67,693		
11	▨ ▨ 과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113,014		
12	▨ ▨ 과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1						
13	▨▨▨▨▨▨소	성주군 ○○○○ 확장사업(◁△면, △△면) 분리 발주 부적정		1						
14	▷▷▷▷▷소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 순성토 반입 부적정		1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전 ◇◇과)  
내 용

성주군 ◇◇과(현 □□□□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성주군에 두는 ◁◁6급의 정원은 2명, ◀◀6급의 정원은 0명, ▷▷▷▷6급의 정원은 최대 2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현 □□□□과)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임용을 하여야 하고, ◁◁6급의 경우에는 최대 2명을, ◀◀6급은 정원이 없어 승진시킬 수 없으며, ▷▷▷▷6급은 최대 2명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성주군 ◇◇과(현 □□□□과)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2019. 12.

1) 시행 시기별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6급 및 ◀◀6급, ▷▷▷▷6급에 대한 정원현황은 본문의 [표] 참고

17.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6급의 현원은 2명으로 정원 대비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1명을 승진 임용 가능하다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함에 따라 2020. 1. 1. ◁◁6급 1명을 정원초과 승진임용 하였고,

2021. 12. 10.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당시 ◀◀6급의 정원은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6급의 정원은 2명으로 현원대비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및 ▷▷▷▷6급에 대해 각각 1명씩 승진이 가능하다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함에 따라, ◀◀6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을 2022. 1. 1. 승진임용 하였다.

[표] 정원초과 승진임용 현황

연번	승진직급	승진심사일별 승진인원 (현원 / 정원)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시기별 정원 현황	정원초과 승진임용
합계	3개 직렬			3명
1	◁◁6급	2019. 12. 17. => 1명 의결 *2020. 1. 1. 승진임용 (3/2)	[시행] 2020. 1. 1. / ◁◁6급 2명 [시행] 2020. 7. 20. / ◁◁6급 2명 [시행] 2021. 1. 11. / ◁◁6급 2명	1명
2	◀◀6급	2021. 12. 10. => 1명 의결 *2022. 1. 1. 승진임용 (1/0)	[시행] 2021. 1. 11. / ◀◀6급 0명 [시행] 2022. 1. 1. / ◀◀6급 0명 [시행] 2022. 12. 31. / ◀◀6급 1명	1명
3	▷▷▷▷6급	2021. 12. 10. => 1명 의결 *2022. 1. 1. 승진임용 (3/2)	[시행] 2021. 1. 11. / ▷▷▷▷6급 2명 [시행] 2022. 1. 1. / ▷▷▷▷6급 2명 [시행] 2022. 12. 31. / ▷▷▷▷6급 4명	1명

이로 인해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정원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6급 1명, ◀◀6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승진자 교육과전에 따른 후속승진 부적정 등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전 ◇◇과)  
내 용

성주군 ◇◇과(현 □□□□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7조 (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VI. 승진임용 2. 근속승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근속승진한 자가 승진하거나 증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로 교육과전 될 경우 해당직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감원하고 종전직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증원하도록 인사요인을 반영·책정하여 적정한 승진인사가 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 1. 근속승진자 교육파견에 따른 후속승진 부적정

성주군에서는 경북도의 중견간부양성과정 시·군별 교육대상인원 배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교육대상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2020. 12. 28. 2021년 경상북도 장기교육훈련 교육 대상자에 ☆☆6급 ◇◇◇을 포함하여 3명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및 확정하였다.

한편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3명 중 ☆☆6급 ◇◇◇의 경우 2014. 7. 1.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된 자로서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달리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으로 관리받고 있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된 자가 중견간부양성 교육 대상자로 교육파견 될 경우에는 후속인사로 6급에 대한 요인은 감원하고 7급에 대한 인사요인은 증원하도록 인사요인을 책정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성주군 ◇◇과(현 □□□□과)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2020. 12. 23. 2021년도 상반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대상자의 근속승진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 인원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6급 승진가능 인원을 1명 증원하여 승진인사하였고 추후 2021. 6. 17. 202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인사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상반기 때 증원시킨 6급을 다시 감원하지 않고 인사요인을 책정하였다.

[표 1] 근속승진자 교육파견에 따른 6급 승진 부적정

구분	2021년 6급 장기교육 대상자	6급 인사요인	비고 1	비고 2
2021년 상반기	① ☆☆6급 ◇◇◇(근속승진)	9명	2021년부터 교육배정인원 2명→ 3명	6급 1명 추가 승진
2021년 하반기	② ◆◆6급 ♥♥♥ ③ ♠♠♠♠6급 ▷▷▷	* 교육인원 증원 1명 책정 9명		
2022년 상반기	① ●●6급 ☒☒☒(근속승진)	13명	근속승진자에 대한 감원요인 미책정	6급 2명 추가 승진
2022년 하반기	② ◆◆6급 ㉑㉑㉑(근속승진) ③ ♠♠♠♠6급 ☒☒☒	2명	근속승진자에 대한 감원요인 미책정	

또한 2022년 중견간부양성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도 ○○6급 □□□(2017. 7. 1. 6급 근속승진), ◆◆6급 ㉑㉑㉑(2017. 7. 1. 6급 근속승진) 등 교육대상자 3명 중 2명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된 자로서 별도정원으로 관리받고 있음에도 2022년 상반기 및 2022년 하반기 때 인사위원회에서 6급 승진요인을 감원하지 않고 인사요인으로 책정하였다.

## 2.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후속승진 부적정

성주군에서는 2020. 12. 18. 명예퇴직·공로연수 및 승진후속으로 인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인사요인으로 6급 9명, 7급 14명, 8급 16명으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2020. 12. 23.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대상자 9명을 심의하였다.

한편 상기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의결된 자 9명 중 ○○6급 □□□, ■■6급 △△△, ▼▼▼6급 ♥♥♥ 등 3명은 각각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한 자로서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달리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으로 관리받고 있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근속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할 경우 당시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의 승진의결 후속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을 승진 의결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성주군 ◇◇과(현 □□□□과)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6급 승진의결자 9명 중에 3명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된 자로서 6급 승진 후속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14명(7급 승진인원)에서 3명을 제외한 11명으로 승진임용(8급→7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가능 인원을 잘못 파악하여 12명을 승진임용(8급→7급) 하였다.

[표 2]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부당승진 현황

(단위 : 명)

인사위원회 개최일	근속승진자 포함 승진심사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결원 및 승진			부당승진	비고
	승진직급	총승진인원	근속승진자포함	하위직급	계획	실제승진		
계		9	3		14	12	1	
2020.12.23	7급→6급	9	3	8급→7급	14	12	1	8급→7급

이로 인해 위 1~2항목과 같은 근속승진자 등 별도정원에 대한 관리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6급 3명, 7급 1명 등 총 4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등 위반 관련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성주군 ●●소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제조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사항 중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소에서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썩은 무를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식품안전나라 제보에 의해 2021. 12. 20. ▽▽시 ▼▼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로 적발 통보 받은 ◆◆식품을 행정처분함에 있어,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과정에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상 품목 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자체 판단을 근거로 시정명령으로 처분하였다.

[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

업 소 명 (위 반 자)	소 재 지	적발통보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정당처분	실제처분
◆◆식품 (AAA)	♡♡면 △△△△길 15	'21. 12. 20.	비가식부분을 원료로 사용	'22. 1. 20.	제조정지 15일 이상 (경감시)	시정명령

그 결과 실제 처분되었어야 할 품목 제조정지 일수에 비해 ◆◆식품의 경우 15일 이상이 부당하게 경감 처분되었다.

## 2. 행정처분 사항 공표 미이행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소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다음 [표 2]와 같이 7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 및 내용을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미공표 현황

연번	연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	2019	■■■■■떡볶이	㉠㉠읍 ㉠㉠읍5길 2	AAA	영업정지(15일)같은 과징금처분	
2	2020	●●●종합식품	㉡㉡면 ㉡㉡3길 140	BBB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2020	●●●식당	㉠㉠읍 ㉠㉠읍1길 23	CCC	영업정지 2개월	
4	2021	●●●종합식품	㉡㉡면 ㉡㉡3길 140	BBB	품목 제조정지 15일	
5	2021	■■■■■■팬션	㉢㉢면 ㉢㉢㉢로 744	DDD	영업소 폐쇄	
6	2022	㉤㉤㉤	㉠㉠읍 ㉢㉢㉢㉢㉢로5길 103	EEE	직권말소	
7	2022	㉥㉥	㉠㉠읍 ㉠㉠읍3길 35	FFF	직권말소	

### 3.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소홀

「식품위생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관할 구역 내의 영업소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및 영업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다음 [표 3]과 같이 23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후관리 소홀 내역

연번	연도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1	2018	ㄱㄱ농산	ㄴㄴ면 ㄹㄹ로 355	GGG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2018	ㄷㄷㄷ식품	ㄱㄱ면 ㄴㄴ3길 47	HHH 외 1	품목 제조정지 37일	
3	2018	ㄴㄴㄴ방앗간	ㄹㄹ면 ㄷㄷ로 4190	JJJ	시정명령, 과징금(120만 원)	
4	2018	ㄷㄷㄷㄷㄷ단란주점	ㄱㄱ읍 ㄴㄱ읍3길 16-3	KKK	영업정지 1개월	
5	2018	ㄷㄷㄷ휴게점	ㄱㄱ면 ㄴㄴ길 28	LLL	과징금(300만 원)	
6	2018	ㄱㄱㄱㄱㄱㄱㄱ	ㄴㄴ면 ㄹㄹ길 85-12	MMM	영업정지 1개월	
7	2018	ㄷㄷ국밥	ㄱㄱ읍 ㄴㄴ길 31-14	NNN	영업정지 2개월	
8	2018	ㄷㄷ휴게점	ㄱㄱ읍 ㄴㄴ로 69	OOO	영업정지 2개월	
9	2018	ㄴㄴ휴게점	ㄱㄱ면 ㄴㄱ길 124	PPP	과징금(300만 원)	
10	2019	ㄴㄴ휴게실	ㄴㄴ면 ㄴㄴ길 90-4	QQQ	영업정지 15일	
11	2019	농업회사법인(주)ㄴㄴ	ㄷㄷ면 ㄷㄷ로 422	RRR	영업정지 7일	
12	2019	ㄴㄴ제면	ㄱㄱ면 ㄴㄴㄴㄴㄴㄴ1길 33	SSS	시정명령, 과태료(40만 원)	
13	2019	ㄴㄴㄴ	ㄱㄱ읍 ㄴㄱ읍4길 29	TTT	영업정지 1개월	
14	2019	ㄴㄴ(주)	ㄱㄱ면 ㄴㄴ로 943-13	UUU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15	2019	ㄴㄴㄴ식당	ㄱㄱ읍 ㄴㄱ읍1길 23	CCC	영업정지 2개월	
16	2019	ㄴㄴㄴㄴㄴ떡볶이	ㄱㄱ읍 ㄴㄱ읍5길 2	AAA	영업정지 15일	
17	2019	ㄴㄴㄴㄴ	ㄴㄴ면 ㄴㄴ1길 12	VVV	영업정지 2개월	
18	2020	ㄴㄴㄴ종합식품	ㄴㄴ면 ㄴㄴ3길 140	BBB	품목 제조정지 1개월	
19	2020	ㄴㄴ제면	ㄱㄱ면 ㄴㄴㄴㄴㄴㄴ1길 33	SSS	시정명령, 과태료(40만 원)	
20	2020	ㄴㄴㄴㄴㄴㄴㄴ식당	ㄱㄱ읍 ㄴㄱ로 3393-17, 2층	WWW	영업정지 15일	
21	2020	ㄴㄴㄴ식당	ㄱㄱ읍 ㄴㄱ읍1길 23	CCC	영업정지 2개월	
22	2020	ㄴㄴㄴㄴ	ㄱㄱ읍 ㄴㄱ읍2길 50	XXX	영업정지 1개월	
23	2020	ㄴㄴㄴㄴ	ㄴㄴ면 ㄴㄴ로 2407	YYY	영업정지 15일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2020년 ○○○○○○○○사업 장기임대 농기계구입(트랙터 외 2종) 적격심사 부적정

성주군 ◆◆과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2020년 ○○○○○○○○사업 장기임대 농기계구입(트랙터 외 2종) 물품구매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2020년 ○○○○○○○○사업 장기임대 농기계구입(트랙터 외 2종)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2020. 7. 27.	2020. 8. 10.	125,000	■■■■■■■■■■농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2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 ○○○○○○○○○사업 장기임대 농기계구입’의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 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심사하였다.

[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내역

계약명	업체명	입찰공고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2020년 ○○○○○○○○○○ 사업 장기임대 농기계구입	■■■■■ ■■■■■ 농기계	2020. 7. 27.	2020. 8. 4.	2021. 6. 30.	BB-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한편 위 사실이 감사 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에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성주군 ◆◆과에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65.7점으로 적격통과점수(8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0. 8. 10.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2020년 ○○○○사업 장기임대 농기계구입(트랙터 외 2종)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85	65.7	
○○○○ ○○○○ 농기계	125,000	'20. 8. 10.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10	적격 통과 점수 (85점)
				경영상태	20	19.3	0	
			입찰가격		70	55	55	
			신인도		+2 ~ -2	0.7	0.7	

## 2. 2020년 성주군 ○○○○ 확장사업(△△면) 관급자재구입(혼합골재) 적격심사 부적정

성주군 ◆◆과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2020년 성주군 ○○○○ 확장사업(△△면) 관급자재구입(혼합골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관급자재구입(혼합골재2)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비고
'20. 9. 1.	257,054	248,722	'20. 9. 14.	(주)○○○○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9호, 2020. 3. 16.) 제9조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자에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건자재, 301099(골재), 3010990201(혼합골재))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sup>3)</sup>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경우 [별표 2](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1](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별표 1-2](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별표 1-3](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별표 2-2](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의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정당한 배점 및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주)○○○○산업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257,054천 원)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별표 3](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3](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별표 2-3](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의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함으로써 종합평점 88.32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한편 위 사실이 감사 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정당한 배점 및 평가기준으로 재차 심사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87.37점으로 적격통과점수(88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호(2019. 10. 1.)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원

[표 2] 관급자재구입(혼합골재) 계약 관련 적격심사(재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sup>4)</sup>	정당평점 <sup>5)</sup>	비고
합계			88.32	<b>87.37</b>	
당해 물품납품 이행능력	납품실적	5	-	<b>5<sup>6)</sup></b>	적격 통과 점수 (88점)
	기술능력	5	-	<b>4<sup>7)</sup></b>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b>28.8<sup>8)</sup></b>	
입찰가격		60	58.32	<b>48.32<sup>9)</sup></b>	
신인도		+3 ~ -2	-	<b>1.25<sup>10)</sup></b>	
결격사유		-30	-	-	

이로 인해 성주군 ◆◆과는 ‘관급자재구입(혼합골재)’ 계약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부적격업체와 2020. 9. 14.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원) 미만으로 적격심사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고시금액(2억 원) 이상으로 적격심사  
 6) 평가비율 :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293,150,490) / 추정가격(257,054,000) \*100 = 114.0% : 5점  
 7) 감사일 현재 업체 확인한 결과 기술평가등급을 미보유, 최저등급(T8이하(보통이하)) 평가 시 4점으로 평가  
 8) 기업신용평가등급 B+ : 28.8점  
 9) 입찰가격 산식

$$48.32 = 60 - 4 \times \left( \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248,722,320)}{\text{예정가격}(282,371,375)} \right) \times 100$$

10) 여성기업(0.5점), 소기업(0.75점) 증명서를 통해 1.25점으로 평가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특산품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성주군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참외, 쌀 등을 구입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1.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특산품 구매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11]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성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1)(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목)의 일반수용비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11) 2020년 12월 23일 폐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적용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구입하고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주군 ●●과 등 8개 부서(기관)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2018~2023년 기간 동안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250건(1억 3,284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부적정하게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 ▲▲▲▲과 등 24개 부서 중 17개 부서는 다음 [표 2]와 같이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특산품 지출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표 1] 2018~2023년 기간 동안 특산품 구매 명목의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부서명	구입 건수	구입액	비고
	합 계	250	132,843,900	
1	●●과	2	2,400,000	
2	♣♣♣♣실	51	31,966,000	
3	▽▽▽▽센터	18	4,468,000	
4	◎◎과	60	38,207,400	
5	⊗⊗⊗⊗과	11	1,803,800	
6	●●●●과	52	32,111,200	
7	□□□□과	55	20,987,500	
8	◆◆◆◆과	1	900,000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특산품 등 지급관리대장 보유 현황(17개 부서 미작성)

연번	부서명	보유 유무	비 고
1	▲▲▲▲과	유	2023년부터 관리
2	○○과	유	2022년부터 관리
3	●●과	무	
4	△△△△과	유	
5	♣♣♣실	유	2023년부터 관리
6	▽▽▽▽센터	유	
7	◎◎과	무	
8	▽▽▽▽과	무	
9	○○○○과	무	
10	××××과	무	
11	⊗⊗과	무	
12	●●소	무	
13	□□□□과	유	2022년부터 관리
14	◇◇◇◇사업소	무	
15	●●●●과	무	
16	●●과	무	
17	●●●●과	무	
18	●●●●사업소	무	
19	□□□□과	유	
20	◆◆과	무	
21	◆◆◆◆과	무	
22	◇◇◇◇사업소	무	
23	◆◆과	무	
24	◆◆과	무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특산품 구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 11]에 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이며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sup>12)</sup>(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에 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지역 특산품의 구입은 행사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구입하고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주군 ●●과 등 6개 부서(기관)에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2018~2023년 기간 동안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18건(1,906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부적정하게 구입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3] 2018~2023년 기간 동안 특산품 구매 명목의 행사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부서명	구입 건수	구입액	비 고
	합 계	18	19,065,500	
1	●●과	7	9,740,500	
2	◆◆◆◆과	2	1,340,000	
3	◆◆◆◆과	6	6,885,000	
4	◆◆◆◆과	1	450,000	
5	●○소	1	150,000	
6	□□□□과	1	500,000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12) 2020년 12월 23일 폐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적용

그 결과 위 1, 2를 종합해 볼 때 특산품 제공에 대한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사적 사용의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예산편성 기준액이 정해진 업무추진비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성주군 ◆◆과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 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구분하고 있고,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의 신인도 규정<sup>13)</sup>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sup>14)</sup>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sup>15)</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가점(0.12)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 
- 13)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Ⅲ. 신인도, 3. 기타, 사.  
26)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제품),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등의 제품 또는 50% 미만 사용한 제품 중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제품)  
2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위 신인도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법령상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자체 원료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평가기준 중 신인도에 따른 가점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 또는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증이 아닌 순환골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골재 및 미분말)를 받은 경우에도 부당한 가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4.88점으로 적격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2. 2. 9.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순위 심사대상 업체는 위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인증가점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낙찰업체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평가결과		가점(0.12) 불인정 인증서	비고
				심사 평점	정당 평점		
☐☐☐☐☐☐☐ 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용역	◆◆환경 (주)	2022.2.15. ~ 2024.2.14.	501,024 (2022.2.9.)	95.00	94.88	환경표지 인증서 (골재 및 미분말)	적격 통과 점수 (95점)

※ 입찰 참여 : 135개 업체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성주군 ◆◆과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 1.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징수 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상속 취득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사망자 내역, 상속 대상 재산 자료, 주민등록망의 상속대상자 등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상속대상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재산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대상자가 상속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5,261,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1] 상속 취득세 부과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피상속인	피상속인번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부과세액
계	18건				422,924,968	15,261,120
1	AAA	●●●●●●●-*****	□□면 □□리 247-1 외 2	20210112	26,686,200	1,054,570
2	BBB	●●●●●●●-*****	△△면 △△리 694 외 4	20210115	21,714,500	828,110
3	CCC	●●●●●●●-*****	▽▽읍 ▽▽리 390-1	20210214	11,481,600	390,410
4	DDD	●●●●●●●-*****	◎◎면 ◎◎리 584 외 1	20210217	33,942,200	1,415,560
5	EEE	●●●●●●●-*****	◆◆면 ◆◆리 산 91	20210309	14,057,868	585,670
6	FFF	●●●●●●●-*****	◎◎면 ◎◎리 448	20210323	39,747,500	1,344,000
7	GGG	●●●●●●●-*****	◎◎면 ◎◎리 1206	20210404	1,076,360	44,530
8	HHH	●●●●●●●-*****	▽▽읍 ▽▽리 605-4 외 2	20210405	59,353,000	2,452,700
9	III	●●●●●●●-*****	◎◎면 ◎◎리 76-3	20210615	2,747,520	112,440
10	JJJ	●●●●●●●-*****	▽▽읍 ▽▽리 1719 1호	20210619	15,204,000	622,360
11	KKK	●●●●●●●-*****	□□면 ◆◆리 647	20210621	24,804,000	824,090
12	LLL	●●●●●●●-*****	△△면 △리 393	20210703	4,814,400	158,870
13	MMM	●●●●●●●-*****	△△면 △△리 370 외 4	20210705	29,297,700	934,850
14	NNN	●●●●●●●-*****	◎◎면 ◎◎리 323	20210723	15,793,400	503,960
15	OOO	●●●●●●●-*****	□□면 ◆◆리 846 외 2	20210819	22,067,620	724,810
16	PPP	●●●●●●●-*****	△△면 △△리 689-1 외 1	20211005	51,113,100	1,658,520
17	QQQ	●●●●●●●-*****	◎◎면 ◎◎리 200	20211027	42,570,000	1,381,350
18	RRR	●●●●●●●-*****	□□면 □□리 412 외 1	20211129	6,454,000	224,320

## 2. 자경농민 경작 목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30,605,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2] 자경농민 유예기간내 매각 추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매각일	과세표준	추징세액
계	19건					1,373,457,900	30,605,150
1	AAA	●●●●●●-*****	☉☉면 ☉☉리 253-2	20200724	20210803	128,900,000	3,031,310
2	BBB	●●●●●●-*****	☉☉면 ☉☉리 403-1	20200814	20211116	10,540,800	242,930
3	CCC	●●●●●●-*****	●●면 ●●리 1286-2	20220511	20220617	90,700,000	2,008,490
4	DDD	●●●●●●-*****	☉☉면 ☉☉리 939-1	20211129	20220630	18,500,000	408,700
5	EEE	●●●●●●-*****	●●면 ●●리 984-1 외 1	20210208	20220118	207,000,000	4,712,850
6	FFF	●●●●●●-*****	●●면 ●●리 55-2	20200831	20220414	206,670,000	4,628,940
7	GGG	●●●●●●-*****	☉☉면 ☉☉리 896	20221104	20221206	8,095,100	173,670
8	HHH	●●●●●●-*****	☉☉면 ☉☉리 1077 외 1	20220211	20220627	59,000,000	1,304,180
9	III	●●●●●●-*****	㉿㉿면 ㉿㉿리 152	20201209	20220913	51,940,000	1,320,270
10	JJJ	●●●●●●-*****	◆◆면 ◆◆리 919 외 1	20210630	20220817	75,000,000	1,642,410
11	KKK	●●●●●●-*****	◆◆면 ◆◆리 67	20210728	20220119	46,000,000	1,047,290
12	LLL	●●●●●●-*****	◆◆면 ◆◆리 142 외 2	20220304	20220422	66,430,000	1,485,780
13	MMM	●●●●●●-*****	㉿㉿면 ㉿㉿리 266	20210120	20220805	140,200,000	2,960,560
14	NNN	●●●●●●-*****	☉☉면 ☉☉리 258	20220114	20220228	12,630,000	285,360
15	OOO	●●●●●●-*****	●●면 ●●리 73	20221028	20221108	12,432,000	268,090
16	PPP	●●●●●●-*****	●●면 ●●리 892	20220224	20220525	3,220,000	71,580
17	QQQ	●●●●●●-*****	◆◆면 ◆◆리 1227-1	20211208	20221121	40,000,000	855,350
18	RRR	●●●●●●-*****	㉿㉿면 ㉿㉿리 266	20220805	20221228	56,000,000	1,196,830
19	SSS	●●●●●●-*****	㉿㉿면 ㉿㉿리 266	20210120	20221228	140,200,000	2,960,560

### 3. 귀농인 농업 외 산업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귀농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귀농인 ㉠㉠㉠이 2022. 3. 29. ㉡㉡읍 ㉢㉢리 763-7외 2필지의 농지(토지 3,847㎡)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2023. 1. 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에스엔에스(SNS) 운영, 의료·패션·잡화·뷰티)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4,197,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 4. 영농조합법인 영농 목적 부동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㉔㉔㉔㉔㉔㉔영농조합법인이 2019. 4. 19. ㉔군 ㉔면 ㉔리 532-1번지 외 1필지의 부동산(토지 4,269㎡)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2021. 7. 7.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0,576,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 5. 농어촌 주택개량자 상시 미거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280만 원 한도)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자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7,245,2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3] 농어촌 주택개량자 상시 미거주 추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추징사유	과세표준	추징세액
계	2건					165,650,270	7,245,210
1	DDD	●●●●●●-*****	㉠면 ㉠리 452-6	20180604	상시거주요건 미충족	60,548,250	3,091,490
2	EEE	●●●●●●-*****	㉡면 ㉡리 156-1	20210326	상시거주요건 미충족	105,102,020	4,153,720

## 6.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상시 미거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제36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4,827,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표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상시 미거주 및 매각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대상	취득일	추징사유	과세표준	추징세액
계	3건					412,000,000	4,827,590
1	FFF	●●●●●●-*****	Ⓣ면 Ⓣ리 803-7	20201201	3년내 매각	230,000,000	2,156,470
2	GGG	●●●●●●-*****	㉠읍 ㉠리 72-1	20210929	3년내 매각	82,000,000	1,269,150
3	HHH	●●●●●●-*****	㉠읍 ㉠리 669-16	20211115	상시거주요건 미충족	100,000,000	1,401,970

### 7.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매각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받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창업중소기업 ㉠㉠㉠㉠㉠㉠가 2021. 4. 22. ㉠면 ㉠리 456번지 외 3필지의 부동산(토지 8,998㎡, 건물 1,927㎡)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2021. 11. 17. 및 2022. 3. 18. 2회에 걸쳐 매각)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107,915,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부과·징수가 누락된 190,628,85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같은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 9. 25. 시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2021. 1. 1. 시행)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국내여비를 집행 시 출장자에게 숙박비, 운임 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sup>16)</sup>(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정산 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16)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2. 민간이전 307목(2020. 12. 23. 폐지, 2021. 1. 1.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적용)



## 2. 보조금으로 지급된 직원 상여금 원천징수 미공제

「소득세법(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및 「지방세법(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5호)」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부터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근로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 9. 25. 시행)」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소속 직원 근로소득 지급 시 자부담(자체 운영비)으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 및 원천징수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다음 [표 3]과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정산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표 3] 보조금으로 지급된 직원 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	지급월	연도별 직원 상여금 지급내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사)(사)(사)(사)(사) 협의회 운영비	계	7,200	8,460	9,000	9,500	10,000
	1월	1,500	1,700	1,800	1,900	2,000
	2월	600	830	900	950	1,000
	3월	0	0	0	0	0
	4월	1,500	1,700	1,800	1,900	2,000
	5월	0	0	0	0	0
	6월	0	0	0	0	0
	7월	1,500	1,700	1,800	1,900	2,000
	8월	0	0	0	0	0
	9월	600	830	900	950	1,000
	10월	1,500	1,700	1,800	1,900	2,000
	11월	0	0	0	0	0
	12월	0	0	0	0	0

그 결과 보조금으로 지급된 직원 상여금 44,160천 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457,28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 3. 현금성 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부적정

「지방재정법(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9호)」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7. 11. 16., 조례 제2205호)」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고, 해당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자본적 경비(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단체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전화요금 등), 용역성 경비(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현금성 지출 경비(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단체운영경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



[표 4] 현금성 경비 지급 및 정산자료

(단위 : 명, 천 원)

세부 사업명	지급 연도	지급 인원	지급단가	지급액	지급명목	집행방법	정산증빙자료
계		30		18,600			
◎◎ ◎◎ ◎◎ 정착 지원	2018	3	500	1,500	생필품, 의료비, 농사용품 지원	현금 지급 (계좌이체)	진료비 계산서 등
	2019	4	1,000	4,000			사용내역 증빙자료 없음
	2020	5	1,000	5,000		사용내역 증빙자료 없음	
	2021	9	500	4,500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사용내역 증빙자료 없음
	2022	9	400	3,600		사용내역 증빙자료 없음	

※ 2018년 : 현금성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진료비 계산서, 집세 이체 영수증, 농어촌공사 이체 영수증)

※ 2019년~2022년 : 현금성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미첨부

그 결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할 현금성 경비 18,600천 원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된 현금성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457,28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目目目目目과(전 ♠♠♠♠과, ♠♠♠♠과)  
내 용

성주군 目目目目目과(전 ♠♠♠♠과, ♠♠♠♠과)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자가용유상운송허가 등 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2. 개별기준에 따르면 운송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및 감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상자 수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 위반차량 운행정지, 감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 目目目目目과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상북도를 거쳐 통보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법령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사항에 맞는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주군 目目目目目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성주군 ㉔2길 136에 위치한 (주)㉔㉔물류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 AAA 등 5건의 운수종사자 법령위반 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길게는 4년 8개월, 짧게는 10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위반차량의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일시 (통보, 신고일)	위반사항	통보처(신고자)	소속	운전자	법적처분기준	행정처분	비고
2018.07.30.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물류	AAA	운행정지 30일	미이행	
2019.01.22.	중대교통사고(중상1명)	한국교통안전공단	㈜①①특수	BBB	운행정지 10일	미이행	
2019.10.01.	중대교통사고(중상1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	CCC	운행정지 10일	미이행	
2019.12.31.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한국교통안전공단	㈜㉸㉸통운	DDD	종사자격증 반납	미이행	
2022.05.10.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유)㉸㉸물류	EEE	운행정지 30일	미이행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법 위반자가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운송으로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처분 미이행 건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sup>20)</sup>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성주군 ⅣⅣⅣⅣⅣⅣ과에서는 “▶▶▶ ▶▶▶▶▶▶▶ 연결도로사업” 및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시공회사에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 미승인하였다.

### 3. 소하천 점용허가 미실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 그 밖에 소하천 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p>20)</sup>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따라서 성주군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주군 ⅢⅢⅢⅢⅢⅢ과에서는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면적이 80,428㎡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대상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사업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22,529천 원<sup>23)</sup>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6.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86조 제9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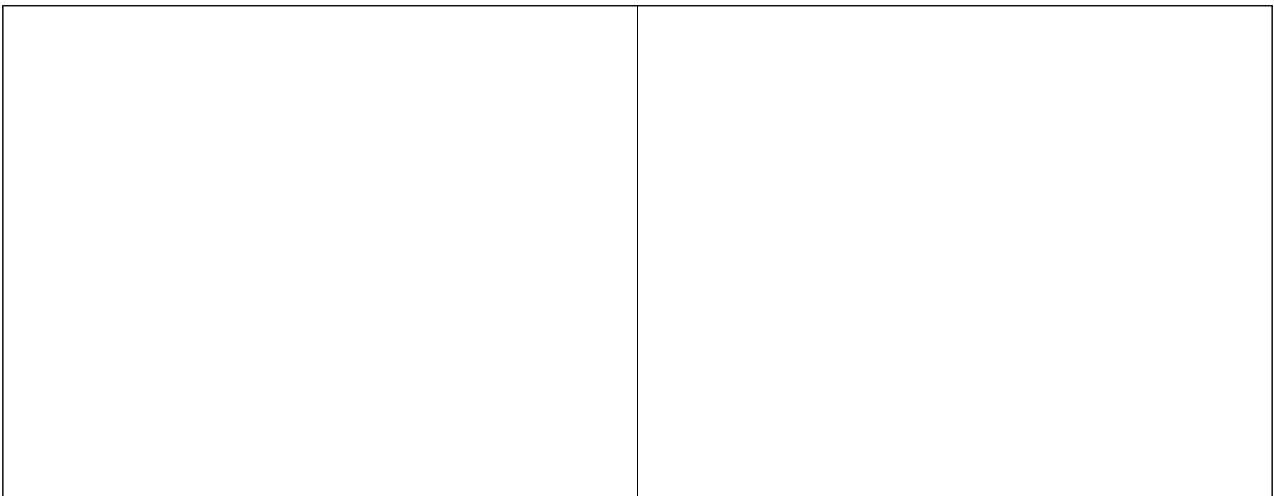
23) 전체 편입 면적 80,428㎡ 중 지적법상 면적을 제외(도로, 53,097㎡)하고, 부과 대상 면적 27,331㎡에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 300원/㎡과 지역계수(1~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그리고 당초 설계시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등 430㎡(부지임대료 포함 공사비 85,800천 원)를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존치하는 가설사무실 건물 656㎡만 매입(부지임대료 포함 공사비 53,500천 원)하여 사업비 32,3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23. 3. 30. 현장 확인 결과 아래 [사진 1]과 같이 시공관리 및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른 인근 농로 진입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완시공을 위한 비용 약 15,870천 원<sup>24)</sup>이 발생 되게 하였다.

[사진 1] 콘크리트 포장 균열 발생 관련 시공 부적격 현황



**나.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화강경계석 설치 시 경계석 기초에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장 시공 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과다 계상된 거푸집 설치비 11,643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 NO 2+180 ~ NO 2+320 구간의 사면 암반 깎기 후 절토사면 녹화(녹생토)를 시공하였으나 아래 [사진 2]와 같이 녹화(식물에 의해서 표면을 피복하는 것)가 불량하고 일부 철망이 노출되어 보완시공(면적 2,244㎡)을 위한 비용 약 44,262천 원이 발생 되게 하였다.

24) 콘크리트 균열 보수 및 재포장(L=20.0m, B=3.5m) 후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로 보완시공 L=245.1m, A=919㎡

[사진 2] 절토사면 녹화 관련 시공 부적격 현황

--	--

7.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총괄수행 지도·점검 미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성주군 ⅢⅢⅢⅢⅢⅢ과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부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67,693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고, 콘크리트 포장 및 절토사면 녹화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품질관리 소홀 사항 및 소하천 점용허가 미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납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전 ㉱㉱㉱㉱과)  
내 용

성주군 ㉱㉱과(전 ㉱㉱㉱㉱과)에서는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2020. 12. 22. ㉱㉱종합건설(주) SSS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	▷ ▷	도로 L=1.057km	3,958	2,534	1,424	2020.12.29. ~ 2023.8.11.	㉱㉱종합건설(주) SSS	

### 1. 관급자재 조달구매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21-5호)」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 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제품으로서 1억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고, 구매 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리하여 구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성주군 ☒☒과에서는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153,170천 원 상당의 관급자재(일반용폴리에틸렌관, 다중벽관, ϕ500)을 구매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지 않고 분할 구매하였다.

[표 2] 중소기업제품(일반용폴리에틸렌관)의 분할 구매 현황

제 품 명	규격	조달청등록 세부품명번호	납품요구일자	납품수량(m)	구매금액(원)	구매방법	비고
합 계				1,618	153,710,00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ϕ500	4014219701	2021.11.8.	830	78,850,000	3자단가계약	1차분 구매
				788	74,860,000		미구입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관급자재를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함에 따라 최대 15,371천 원<sup>25)</sup>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 2. 공사비 과다 계상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5)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가격제안 시 조달청과 계약된 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을 실시함에 따라 구매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 가능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주군 ☒☒과에서는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한국형 포장설계법<sup>26)</sup> 및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8.)을 적용하여 포장두께를 재산정<sup>27)</sup>한 결과 28cm(표층 5cm, 기층 8cm, 보조기층 15cm, 동상방지층 0cm)면 가능한데도, 포장두께를 60cm(표층 5cm, 기층 10cm, 보조기층 20cm, 동상방지층 25cm)로 산정하여, 사업비 62,777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초 설계시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를 450㎡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172.8㎡로 설치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42,196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 까지 감액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2009. 12. 30.)에

26) 2001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전국의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수행한 10년 만에 국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도로 포장설계법을 개발

27) ①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표층, 기층, 보조기층)의 카탈로그 단면으로 성주군에서 포장두께를 산정한 결과임.(1. 포장설계등급 : 설계차량대수 7,000대/일 미만으로 설계 3등급으로 결정, 2. 포장단면 산정 1) 교통조건 연평균 일교통량결과(101~500대/일)에 따라 C2로 결정, 2) 노상 조건에 따라 주변 지역의 토질상태가 일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S2로 결정)

② 설계동결 깊이(포장 단면에 동결 현상이 발생하는 깊이)를 산정한 결과 24cm로써 포장 두께는 28cm로 동결이 발생하는 깊이보다 깊어 동상방지층 불필요

따르면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은 비탈면 경사, 지반 조건, 토양 경도 및 토양 산습도, 시비 여부, 녹화 보조공법 필요 여부를 토대로 비탈면의 조건과 식생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각기 비탈면에 토사, 견질토사, 리핑·풍화암에는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법(두께 50mm미만)을, 발파암(비탈면 경사 1:1.0~1:0.7이하)에는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법(두께 50mm이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군 ☐☐과에서는 “☘☘☘☘☘☘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풍화암 절토 사면 녹화 구간에 불필요하게 두께를 10cm로 반영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8,04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사업비 113,014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13,014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성주군 ☒☒과에서는 건축주 (주)●●●●으로부터 2022. 3. 10. ☒읍 ☒리 900번지 상 공장 증축(연면적 10,657.2㎡, 증축연면적 3,127.98㎡)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3. 21. 건축(증축)허가를 수리하였고 같은 해 9. 2. 사용승인한 건축물 등 총 11건의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조에 따르면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며,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 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을 시험한 결과 성능을 확보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고,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용도로 쓰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례시설 등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창고시설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성주군 ○○과에서는 2022. 10. 7. 건축주 사회복지법인 ○○가 ○○면 ○○리 952번지에 신청한 노유자시설 증축허가 사항을 검토하면서 증축부분의 바닥면적이 630.27㎡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가 넘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등 다음 [표 1]과 같이 총 8건에 건축 허가를 처리 하면서 내화구조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또한 건축주 ○○○○○(주)가 Back Space 면 Enter 리 1524에 2022. 1. 3. 허가 신청한 공장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다음 [표 2]와 같이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했고, 건축주 ○○○영농조합법인이 Page Up 리 866-12번지 등 2필지 상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표 3]과 같이 난연 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 건축허가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m<sup>2</sup>)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증축 연면적	지붕내화 구조인증서	비고
1	F4읍 F3리 1539 등 11필지	20.10.28.	TTTTTT농협	판매시설	8,355.59	5,198.74	무	기준연면적 500m <sup>2</sup>
2	F4읍 F7리 609-3	20.10.2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UU	창고시설	997.5		무	기준연면적 500m <sup>2</sup>
3	F4읍 F8리 979	21.02.01.	VVVVV(주)	공장	4,142		무	기준연면적 2,000m <sup>2</sup>
4	F4읍 F9리 1320	21.03.08.	(주)VVVVV	공장	15,227.64	5,619.25	무	기준연면적 2,000m <sup>2</sup>
5	F4읍 F0리 840 등 3필지	21.04.20.	ZZZ 등 2	노유자시설	591.09	239.22	무	기준연면적 400m <sup>2</sup>
6	F11면 F2리 462-1 등 3필지	21.06.04.	YYY	제1종근린 생활시설	802.33		무	기준연면적 400m <sup>2</sup>
7	F4읍 A리 900	22.03.21.	(주)●●●●	공장	10,657.2	3,127.98	무	기준연면적 2,000m <sup>2</sup>
8	Shift면 Ctrl리 952	21.12.24.	사회복지법인 H H	노유자시설	1,044.2	630.27	무	기준연면적 400m <sup>2</sup>

[표 2]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m<sup>2</sup>)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증축 연면적	방화문 인증서	비고
1	F4읍 A리 899	22.01.28.	EndEndEnd(주)	공장	17,408.54	6,215.35	무	
2	F11면 F1리 1524	22.01.18.	F3F3F3F3F3(주)	공장	3,495.66	1,068.42	무	

[표 3] 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단위 : m<sup>2</sup>)

연번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복합자재시험 성적서	비고
1	F11면 Ctrl리 866-12번지 등 2필지	22.10.05.	영농조합법인	창고시설	198	무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성주군 ○○○○ 확장사업(◁◁면, △△면) 분리 발주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성주군 ☒☒☒☒☒☒소에서는 「성주군 ○○○○ 확장사업(◁◁면), 성주군 ○○○○ 확장사업(△△면)」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감리자	비고
		계	도급	관급					
성주군 ○○○○ 확장사업(◁◁면)	관로공L=43.5km, 조절지40톤, 가압장14개소	14,400	8,696	5,704	'20.6.23	'20.6.25 ~ '25.6.24 (주ZZ)건설 YY	FFFF FF	공정률 35%	
성주군 ○○○○ 확장사업(△△면)	관로공L=42.5km, 배수지100톤, 가압장15개소	10,836	6,074	4,762	'20.6.23	'20.6.25 ~ '25.6.24 (주WW)종합건설 UU	FFFF FF	공정률 43%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sup>28)</sup>, 4. 그 외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와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sup>29)</sup>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sup>30)</sup>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8)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29)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함

30)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경우 낙찰하한율은 79.995%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한편 성주군 ○○○○ 확장사업(◁◁면, △△면)은 총사업비가 31,495백만 원으로 환경부 균특 전환사업으로 확정된 공사이고, 2020년 성주군 세출예산서에는 성주군 ○○○○ 확장사업(◁◁면, △△면)인 단일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성주군 ☒☒☒☒☒☒소에서는 2020. 5. 25. 성주군 ○○○○ 확장사업(◁◁면)과 성주군 ○○○○ 확장사업(△△면)으로 분리 발주하였고, 2020. 6. 23. ◁◁면 구역은 (주)ZZ건설(YYYY)과 계약하였고, △△면 구역은 (주)WW종합건설(UUU)과 각각 계약하였다.

또한, 아래 [표 2]~[표 4]와 같이 ◁◁면, △△면을 분리 발주와 통합 발주로 각 비교함에 따른 통합 발주의 경우 표준시장단가와 낙찰하한율(79.995%)의 적용으로 최대 3,282,817천 원의 예산이 절감 되는 것<sup>31)</sup>을 알 수 있다.

[표 2] 계약금액 비교

(단위 : 천 원)

구 분	발주금액(도급)	낙찰금액(계약)	비 고
성주군 ○○○○ 확장사업(◁◁면)	9,171,800	7,924,122	낙찰율 86.2%
성주군 ○○○○ 확장사업(△△면)	6,091,300	5,281,352	낙찰율 86.2%
성주군 ○○○○ 확장사업(통 합)	12,865,900 (표준시장단가 적용)	10,292,076	낙찰하한율 79.995% 적용
절 감 액	2,397,200	<b>2,913,398</b>	낙찰율 적용 시 감 516,198천 원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감리비 비교

(단위 : 천 원)

구 분	총공사비 (도급액+관급액)	(분리 발주 시) 감리비	(통합 발주 시) 감리비	비 고
성주군 ○○○○ 확장사업(분리 발주)	27,790,000	2,876,000	2,267,300	낙찰율 78.8%
성주군 ○○○○ 확장사업(통합 발주)	25,392,800 (표준시장단가 적용)	2,789,000	2,197,900	"
절 감 액			<b>69,400</b>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

31) □ 통합 발주 시 예산 절감: 최대 3,282,817천 원  
 ○ 계약금액(2,913,398천 원), ○ 감리비(69,400천 원), ○ 물가변동금액(227,957천 원),  
 ○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 등 1개 동 계상(72,062천 원)

[표 4] 물가변동금액 비교

(단위 : 천 원)

구분	절감액		건설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비 고
	◁◁면	△△면	◁◁면	△△면	◁◁면	△△면	
물가변동(1회)	46,197	21,108	276,135	172,874	229,938	151,766	
물가변동(2회)	44,640	16,189	266,827	132,589	222,187	116,340	
물가변동(3회)	37,083	14,300	221,658	117,117	184,575	102,817	
물가변동(4회)	35,960	12,480	214,941	102,213	178,981	89,733	
절 감 액(◁◁면+△△면) <b>227,957</b>	163,880	64,077					

※ 성주군 제출자료 재구성(낙찰하한율 79.995% 적용 시 비교)

따라서 성주군 ☒☒☒☒☒소에서는 성주군 ○○○○ 확장사업(◁◁면, △△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예정가격의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산서 등으로 확정된 단일공사에 대해 통합 발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성주군 ○○○○ 확장사업(◁◁면, △△면)에 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분리 발주함에 따라 통합 발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3,282,817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감사일 현재 위 사업의 공정률은 ‘◁◁면 구역은 35%, △△면 구역은 43%’로 향후 물가상승분의 영향으로 인해 추가로 예산 낭비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 된다.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 순성토 반입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성주군 >>>>>>소에서는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성주군 ☆☆☆☆☆☆ 타운 조성사업	주민수익사업, 주민지원사업, 소각로폐열 연결관로공, 부대공사 등	3,133	2,793	340	2022.5.19.	2022.5.19. ~2023.6.23.	☐☐☐☐(주) HHH	공정률 70%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m<sup>3</sup>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감리 시공업체도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고시 제6조에 따르면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주군 ▷▷▷▷▷소에서는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 등 적극 노력하였어야 했으며, 위 사업 추진을 위해 순성토를 반입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토석 반출입 기간이 겹치는 인근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위 사업을 위한 성토재로 반입하여 운반비 등 예산 절감의 기회를 도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순성토 9,996m<sup>3</sup>를 반입하면서 사토·순성토 발생량 1,000m<sup>3</sup>이상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위 사업의 순성토에 대한 정보를 미입력하는 등 시스템 미활용으로 인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였을 경우 인근 현장(♀♀♀♀♀♀파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사토를 위 사업을 위한 성토재로 반입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장과 10km 떨어진 성토재를 반입함에 따라 최대 94,136천 원(제경비 포함)의 운반비 등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사토·순성토 발생 사업장 현황

공 사 명	기간	사토(m <sup>3</sup> )	순성토(m <sup>3</sup> )	시스템 등록여부	비고
♀♀♀♀♀♀파크 조성공사(1단계)	2022.9.12.~2022.9.26.	14,430	-	여	♀♀과
성주군 ☆☆☆☆☆타운 조성사업	2022.9.14.~2022.9.26.	-	7,021	부	▷▷▷▷▷소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